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7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이용우·임미애·김기표

송재봉 · 김남근 · 이수진

송옥주 · 양부남 · 최민희

김영환 · 이광희 · 허성무

강유정・김 윤・김주영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번호,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인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의 주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한편,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장착된 배터리, 즉 구동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이전에 구동축전지의 이상(異常) 유무를 즉각 감지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검사 를 받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1항),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안 제31조의5제2항),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3항),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1조의5제4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 전단 중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을 "차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의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조치) ① 전기자동차의 제작자는 전기자동차에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상(異常) 상황 (이하 "구동축전지의 이상"이라 한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전기자동차에서 구동축전지의 이상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견인을 위 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제4항 중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그 내압용기"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의 이상을 전기자동차 소 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 압용기를 판매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이상을 통지 받아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의5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 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 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 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 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 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환경친화 <신 설>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는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제 <신 설>

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의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가 기재 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전기자동차 구동축전 지의 안전조치) ① 전기자동차 의 제작자는 전기자동차에 구 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상(異常) 상황 (이하 "구동축 전지의 이상"이라 한다)을 감 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전기 자동차에서 구동축전지의 이상 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전기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전기자동차 소 유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 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 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 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 작자는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 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 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 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 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견인을 위하여 관할 소방 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 1. 제3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자
- 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의 이상을 전기자 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

<신 설>

- ⑤·⑥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 략) <신 설>

8. (생략)

④ ~ ⑥ (생 략)

니한 자

- 3.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 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 ⑤·⑥ (현행과 같음)
- 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1.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이 상을 통지받아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8. (현행과 같음)
 - ④ ~ ⑥ (현행과 같음)